

부천시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6월 30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5년 7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20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년 7월 12일)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 설명자 : 재난안전관리과장 이 광 택)

□ 제안이유

-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인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 무인카메라 설치·운영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자 부천시 무인카메라설치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청소년 및 부녀자 보호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장소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인근 지역(반경 5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가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3조)

- 무인카메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천시무인카메라종합관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할 때에는 취득한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제센터 출입자 통제,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보안 각서 징구 및 정신교육 실시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4조)
- 무인카메라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부천시무인카메라설치·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 내지 제12조)
- 취득한 정보는 초상권과 인권침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무인카메라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현장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제정안인가 ?		○ 상위법이 없음.	
○ 무인카메라 설치시 인권침해 문제가 제일 심각할것으로 이에대한 대책은 ?		○ 청소년 및 부녀자 보호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2/3이상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고 관제센터 출입자 통제, 모니터링요원에 대한 보안각서 징구, 정신교육등 대책을 강구할것임.	
○ 무인카메라 설치 장소는 ?		○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설치장소 선정은 자문 결과에 따를것이나 관제센터는 지구대가 될것임.	
○ 경찰서는 어느부서와 업무 연관되는지 ?		○ 생활안전과 임.	
○ 지구대의 사무실이 협소할것으로 관제센터설치 장소가 가능한가 ?		○ 운영장소는 문제가 안될것이며, 이후 시의 종합관제센터가 설치되어야 할것임.	
○ 무인카메라 개당 2천 2백만원 정도로써 고가제품인데 관리 방법은 ?		○ 구매는 공개입찰하며 경찰관서와 관리·운영을 협의할것임.	
○ 무인카메라 사용연한은 ?		○ 기종에 따라 틀려진다고 봄.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 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406호
의결 년월일	2005. 7. 15 (제120회)

제출년월일 : 2005. 6. 30

제출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인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고,
- 무인카메라 설치·운영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자 부천시무인카메라설치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청소년 및 부녀자 보호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장소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인근 지역(반경 5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가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3조)
- 나. 무인카메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천시무인카메라

종합관제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할 때에는 취득한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제센터 출입자 통제,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보안각서 징구 및 정신교육 실시 등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무인카메라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부천시무인카메라설치·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 내지 제12조)

라. 취득한 정보는 초상권과 인권침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마. 무인카메라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현장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부천시 무인카메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무인카메라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인카메라”라 함은 관내 청소년 및 부녀자 보호,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등 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말한다.
2. “모니터링 요원”이라 함은 무인카메라 화상모니터를 이용한 화상순찰을 전담하도록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3. “인근지역”이라 함은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곳으로부터 반경 50미터 이내를 말한다.

제3조(설치 등) ①시장은 청소년 및 부녀자 등 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시 지역 안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

②설치장소를 결정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인근지역에 주소를 둔 가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설치장소에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도록 설치목적과 작동상태 등 알아야 할 사항을 기록한 안내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하며, 비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관제시스템 설치·운영) ①시장은 무인카메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산 설치된 무인카메라 모니터를 통합하여 제어·관리할 수 있는 무인카메라종합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관제센터를 운영할 때에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제용 컴퓨터는 외부인이 화면을 볼 수 없도록 보호 또는 차단 장치를 하여 시민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무인카메라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요원에 대하여 보안각서 징구, 정신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 및 운영) ①무인카메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무인카메라설치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②시장은 무인카메라의 정상적인 작동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에 관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무인카메라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무인카메라설치운영자문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무인카메라 설치에 관한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무인카메라의 설치 기종, 설치 지역 및 장소, 설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무인카메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무인카메라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취득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자문
6. 기타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의회 의원 3인, 무인카메라설치업무 담당국장, 관할 경찰서 담당과장 각 1인과 무인카메라 운영에 관련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기타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무인카메라설치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보고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일비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엄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정보관리) 영상자료 등 무인카메라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초상권과 인권침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주민감독관의 위촉) ①시장은 관할지역의 신망이 있는 주민중에서 관할동장의 추천을 받아 주민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주민감독관은 관할구역안의 무인카메라의 운영에 대하여 현장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회계과	제6조 2항 자문위원회에서 설치기종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특정제품을 결정할 경우 국가계약법상 법적 타당성 부족	미반영 조례안 제6조2항의 설치기종에 대한 심의·조정은 회전식과 고정식, 카메라 화소의 크기, 적외선 투시기능, 돔형과 막대형 등 종류, 성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특정제품을 심의·조정하는 것은 아님.
부천중부 경 찰 서	제1,2조 ①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 여부 ②조례안의 기본권 침해여부 ③예산은 지자체 담당, 운영 및 보안, 자료통제 등은 경찰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보완 필요	미반영 ①지방사무로 설치 가능 ②조례안 제3조(설치 등), 제4조(종합관제시스템 설치·운영), 제6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3조(정보관리)에 규정되어 있음. ③제5조, 제6조, 제13조에 의거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음.
	제2조 제1호 국가사무의 침해논란에 대비하여 부천시장과 부천중·남부경찰서장의 협약에 의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 요망	미반영 제6조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할 내용임.
	제3조 2항 ◦ 인근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설치장소를 결정하도록 하는데 인근지역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필요 ◦ 동의를 어느 기관에서 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호 긴밀한 협의 필요	미반영 제6조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임.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부천중부 경 찰 서	제4조, 제5조 ◦ 관제센터 운영주체를 경찰에게 주던가, 시장과 경찰서장간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요구 ◦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보안 각서 징구 및 정신교육 실시 등에 대하여도 경찰이 담당하거나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할 것임.	미반영 제6조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임.
	제6조 자문위원회 기능에 경찰서관련업무 자문 성격도 포함	미반영 경찰서장이 필요시 시에 요구하여 운영 가능
	제7조 자문위원회 구성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함에 목적이 있으니 자격 제한은 불가	미반영 자문위원회에 시민단체를 참여시킬 예정이며, 또한 제14조 주민감독관 위촉으로 주민참여 가능
	제13조 ◦ 카메라 영상자료의 녹화 및 보관방법, 자료의 손상·파괴 및 해킹·바이러스감염 등으로부터의 방지, 무인카메라 관제센터의 출입통제구역 설정 등 보안대책 강구, ◦ 자료의 보존기간 및 폐기규정, 자료의 외부유출에 대한 구체적 규정 요망	미반영 제6조의 자문위원회 기능에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해킹 등의 문제는 우리시뿐 아니라 어느 기관에서나 평소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대상 아님
	제14조 주민감독관의 현장감독의 범위에 대해 그 역할과 한계를 추후 명확하게 규정 요망	추후 결정 운영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할 경우 반영할 예정임

경 찰 청

수신자 부천시장(시민봉사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시

1. 관련근거

부천시 시민봉사과 - 1615(2005. 2. 7.) 『부천시 CCTV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가능여부 질의

2. 위와 관련하여, 경기도 부천시에서 우리청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 불임과 같이 답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임 : 『부천시 CCTV 설치 및 운영조례』 검토의견 1부. 끝.

선결	시장	부천	결재(공람)	부시장	이호진
접수일시	2005.3.19.	번호	3253	주장	이영진
	시 분	호		과장	이영진
처리과	시민봉사과	인방시각			

경 찰 청



★경감

정환수

경정 이진

생활안전과장

전결 03/19

이성현

협조자

시행 생활안전과-1077 (20050319.)
우 120-704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미근동 209)
전화 02-313-0702(2846) 전승 8-3846-

접수 시민봉사과-3253 (2005.03.19.)
/www.police.go.kr
/kpolice058@npa.go.kr / 공개

부천시 CCTV 설치 및 운영조례 검토의견

□ 질의요지

- 부천시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각종 범죄와 청소년 사고·탈선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범죄 발생률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 향후 교통·소방·청소·방범 종합관제시스템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2005년도에 범죄예방용 CCTV 30대를 시범설치하기 위해 부천시 CCTV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데
- 동 조례 제정이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인지 여부

□ 질의회시

○ CCTV 설치가 지방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와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를 검토한 바

- 범죄 수사 및 피의자 검거 목적만을 위한 CCTV 설치는 국가기관의 사법에 관한 사무로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CCTV를 설치할 수 없으나
- 부천시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각종 범죄와 청소년 사고·탈선 등을 사전에 예방하며 향후 교통·소방·청소·방범 종합관제시스템 전환을 목적으로 한 CCTV 설치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조례제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CCTV 설치 는 지방사무이므로 조례제정을 통한 CCTV 설치 및 운용은 가능하다고 보이나
- 현재 국가혁신위원회에서 CCTV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니 동 법 제정 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개인정보보호법(안) 제14조(자동수집장치에 의한 수집 등)

- ① 누구든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자동정보수집 컴퓨터 프로그램 등 자동화된 개인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는 때에는 고지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정보 주체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개인정보 취급자는 자동화된 개인정보 수집 장치의 활용내역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 다만, 부천시에서 제정한 조례안의 내용과 개인정보보호법안의 내용이 크게 상이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법 제정 전이라도 동 조례안의 내용대로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기타(증거능력 및 사생활 침해 여부)

CCTV로 촬영된 화면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사생활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된 바가 없어 경찰청에서 일괄적으로 답변할 수 없으며 문제될 경우 구체적 판결을 통해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사생활 침해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담당자	시민봉사과장	총무국장			결 재
이순이 04/16	박상설 04/16	전결 이상문 04/16			
					협조

출 장 보 고 서

1. 출 장 일 시 : 2005. 4. 15. 14:00~18:00(면담시간 16:10 ~ 16:50)
2. 출 장 장 소 : 법제처 행정법제국 정태용 법제심의관실
3. 대 상 : 시민봉사과 민방위팀장 이순이
4. 출 장 내 용 :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 거부에 따라 경찰청의 질의회신내용만으로 「부천시 CCTV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이 곤란하여 법제처 조례담당 정태용 법제심의관(2급)과의 면담을 통해 조례 제정 가능 여부와 조례(안) 조문에 대한 자문 결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경찰청 회신내용대로 국가사무인 범죄수사 및 피의자 검거 목적만을 위한 CCTV설치는 불가하나

○ 청소년 및 부녀자 보호 및 향후 종합관계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CCTV 설치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사무로 볼 수 있어 별첨 조례(안)대로 조례제정이 가능할 것이며

○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 및 지방경찰제 시행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내에서 적절하게 업무처리를 하여야 할 것임.

붙 임 : 부천시 CCTV 설치 및 운영조례(안) 1부. 끝.

2005년 4월 15일

보고자 직급 : 지방행정주사 성명 : 이 순 이